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주체 86(1997)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 92(2003)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

주체 97(2008)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6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0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50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1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7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79호로 수정보충

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1조 (가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은 가격의 제정, 등록, 적용, 조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가격의 종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격은 국가의 통일적 인 지도밑에 제정, 적용되는 계획가격 이 다.

가격의 종류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요금 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일부 보충적가격이 속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의 종류를 새로 나오거나 없앤다.

제3조 (가격정책의 정확한 실시원칙)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서 가격 은 인민들의 자주적 이 며 창조적 인 생 활을 보장하기 위 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가격정책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려지도록 한다.

제4조 (가격의 일원화원칙)

가격을 일원화하는것 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적요구이 다.

국가는 중앙가격 지도기관의 통일적 인 지도밑 에 가격사업 의 유일성 을 보장하도록 한 다.

제5조 (가격관리원칙)

가격관리는 일정한 경제적목적에 맞게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종해나가는 사회적인 지휘기 능 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과 적용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고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가격조 종 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6조 (가격관리정보체계수립원칙)

국가적 인 가격관리정보체 계는 가격사업 의 과학성과 시 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 단이 다.

국가는 전국적범 위 에서 가격관리정보체 계를 수립 하고 가격사업 을 정 보화하도록 한 다.

제7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가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격일균양성에 깊은 관심 을 돌려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 내도록 한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무역가격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가격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있지 않는 사 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가격의 제정

제9조 (가격제정의 기본요구)

가격 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민 심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사회주의기본경제 법 칙과 가치법 칙의 요구에 맞

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자극하고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가격을 바

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가격제정권한)

가격제정은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지표목록에 따라 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가격제정지표목록의 작성, 시달)

중앙가격 지도기관은 가격제정 지표목록을 작성 하여 제때 에 시 달하여 야 한다.

가격제정 지표목록에는 국가가격 기관과 기관, 기 업소, 단체의 가격제정 권한과 책 임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가격제정방법)

국가가격기 관은 지 표별 , 부문별균형 을 맞추는 방법 으로 표준가격 , 기 준가격 , 허용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을 기준가격과 허용한도에 기초하여 자체로 정하거나 중앙가격 지도기관이 정한 가격제정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 하여 야 한다.

제13조 (처음 생산한 제품의 가격)

국가적으로 처음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특별한 경우 국가 가 격기관이 정할수 있다.

처음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하여서는 먼저 립시가격을 정하고 그 제품의 쓸모가 확정된 다 음 가격을 다시 정한다.

제14조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

수출입상품의 국내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 업소, 단체 가 정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다른 상품가격의 안정성

과 공고성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외봉사부문의 가격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일부 제품의 가격)

대외봉사부문의 가격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여 국내상업망에 넘겨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제16조 (가격제정신청문건의 제출)

가격을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경제적자료와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신청문건양식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7조 (가격제정신청문건의 처리)

국가가격기관은 가격제정신청문건을 1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정형을 해

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가격제정신청문건처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체화상품, 불량상품, 폐기하는 재산의 가격평가)

체화상품, 불량상품, 폐기하는 재산의 가격평가는 해당 가격평가위원회가 한다.

제19조 (가격을 고쳐 정하는 사업)

인민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쳐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제3장 가격의 등록

제20조 (가격등록의 기본요구)

가격등록은 가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정한 가격을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가격등록기관)

가격등록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특별한 경우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해

당 기관도 할수 있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등록을 제때 에 해주어 야 한다.

제22조 (가격등록절차, 방법을 정하는 기관)

가격등록절 차와 방법 은 중앙가격 지 도기 관이 정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등록절차와 방법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 (가격등록신청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및 영업허가, 규격, 제품상표승인 등 해당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 가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이 없이도 가격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가격수준의 변동, 소속관계의 변경 등 등록신청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가격등록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4조 (가격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등록신청문건양식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5조 (가격등록)

국가가격 기관은 가격등록신청 문건에 기 입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가격등록대 장에 등록하여 야 한다.

제 26조 (가격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등록기일이 만기되었거나 등록된 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가격의 적용

제27조 (가격적용의 기본요구)

가격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가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 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가격기관은 가격적용방법과 절차를 바로 정하며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

다.

제28조 (가격의 적용방법, 절차, 대상을 정하는 기관)

국가가가격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하는 가격의 적용방법, 절차, 대상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9조 (가격 에 기초한 인민경제 계 획수행실적의 평가)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 (지표별에 따르는 가격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격 기관이 제정한 가격 또는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등록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정한 가격을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제31 조 (가격편차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손실금의 보상)

국가적인 조치로 생긴 가격편차에 의한 수입금은 국가예산에 납부하며 손실금은 국가예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납부금 또는 보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32조 (가격적용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격기관이 가격을 정한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가격기관의 적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가격표의 게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격기관이 인증한 가격표를 해당 제품이나 봉사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의 형식과 내용, 게시방법 같은것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거나 가격표에 정해진 가격과 어긋나게 판매, 봉

사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5장 가격의 조종

제34조 (가격조종의 기본요구)

가격 조종은 가격공간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할수 있게 전반적가격수준을 국가가 의도하는대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 , 지속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가격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종하여야 한다.

제35조 (가격조종목표)

국가의 전반적 가격 을 안정 시 키 는것 은 가격 조종의 목표이 다.

중앙가격 지도기관은 국내 생산물의 가격 , 주요제품의 국제 시장가격 등에 기초하여 가격 조종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36조 (가격의 조사)

국가가가격기관은 가격관리 를 위 한 가격조사사업 을 정상적 으로 진행 하여 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가격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가격자료의 분석, 예측)

중앙가격지도기관은 생산물의 가치 및 가치형태의 변동,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 화폐가치 변동 같은 가격변동에 작용하는 요인을 지표별로 과학적 으로 분석 하고 가격동태를 예측하여야 한다.

중앙가격 지도기관은 가격 자료의 분석 , 예측사업 에 현대 적 인 정보수단과 분석 방법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가격수준의 조종)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계획, 재정, 은행 등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경제기술적방법과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수준을 조종하여야 한다.

제6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 주의가격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 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가격사업의 유일성과 가격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가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가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방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의 가격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가격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재정 은행 기관, 노동행 정기관, 통계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 제정과 등록, 적용, 조종에 필요한 자금, 로력, 설비, 자료 같은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2조 (비상설가격심의위원회 조직, 운영)

국가의 가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도 (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비상설 가격심의위원회를 둔다.

도 (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비상설가격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 하여야 한다.

제43조 (가격제정, 적용의 합의, 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가격기관의 합의,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수 없다.

제44조 (가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가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격의 제정, 등록, 적용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

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2.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가격의 10배
3. 국가가격기관의 인증을 받은 가격표를 게시 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가격의 10배
4. 가격의 적용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80만원
5. 가격관련문건을 위조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제47조 (중지처벌)

제46조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 시킨다.

제48조 (몰수처벌)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49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1. 가격제정원칙과 방법, 절차대로 가격제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가격제정 및 등록신청문건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3.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5. 제정, 등록된 가격으로 계획, 재정, 금융, 통계계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가격의 적용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 봉사를 하였을 경우
7. 국가가격기 관의 인증을 받은 가격 표를 게 시 하지 않고 판매 , 봉사를 하였을 경 우
8. 가격조사, 분석, 예측을 바로하지 않거나 가격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 장하지 않아 가격조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가격관리사업을 방해하여 가격 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가격제정과 등록, 적용, 조종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가격사업에 지장
8. 가격조사, 분석, 예측을 바로하지 않거나 가격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보 장하지 않아 가격조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가격관리사업을 방해하여 가격 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가격제정과 등록, 적용, 조종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가격사업에 지장 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50조 (형사적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 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